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10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제63조(계약목적)

1. 유허수목원요양원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 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64조(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6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3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를 계약사항을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⑧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 제66조(급여이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 월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따른다.

2025.01.01기준 (단위: 원)

| 등 급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2025년 수가 | 90,400 | 83,910 | 79,240 |

| 구분    |       | 본인부담금(30일 기준)                                            |          |         |
|-------|-------|----------------------------------------------------------|----------|---------|
|       |       | 일반(20%)                                                  | 경 감(12%) | 경 감(8%) |
| 본인부담금 | 1등급   | 542,700                                                  | 325,620  | 217,080 |
|       | 2등급   | 503,460                                                  | 302,080  | 201,390 |
|       | 3~5등급 | 475,440                                                  | 285,270  | 190,180 |
| 식재료비  |       | 식비 : 3,700*3식*30일 = 333,000<br>간식비 : 600*2회*30일 = 36,000 |          |         |
| 합계    | 1등급   | 911,700                                                  | 694,620  | 586,080 |
|       | 2등급   | 872,460                                                  | 671,080  | 570,390 |
|       | 3~5등급 | 844,440                                                  | 654,270  | 559,180 |

#### 제6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8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5.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